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도로법」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
2.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